

2020

보고서

* 일시 : 2020. 6. 19(금) 오전 11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01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oreandiakonia.org

2020 정기총회 순서	3
01. 조직	
가. 회원 명부	4
나. 법인 이사 명부	4
02. 회의록	
가. 총 회	5
나. 이사회	6
03. 2019년 사업보고	7
04. 2019년 감사보고	9
05. 2019년 결산보고	11
06. 2020년 사업계획	13
07. 2020년 예산안	17
08. 법인 정관	18

■ 정기총회

○ 의장 : 정성진 목사 (이사장)

- 1.
2. 회원점명
3. 개회선언
4. 회순채택 다 같 이
5. 2019년도 사업보고(p.7-8)/결산보고(p.11-12) 사무총장
6. 2019년도 감사보고(p.9-10) 감 사
7. 2020년도 사업계획(p.13-16)/예산안보고(p.17) 사무총장
8. 폐회기도
9. 광 고

1. 조직

가. 회원명부

강성웅(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소장)	고명길(소망의교회)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민섭(한국의료복지선교회)
김병삼(만나교회)	김성이(한국관광대학교)
김양원(신망애교회)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회장)
김종익(울산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김해성(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박종일(오창대광교회)	박홍자(맛샘캐터링 대표)
옥성석(충정교회)	옥재부(울산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유명운(용인 사랑의집 시설장)	유장춘(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 교수)
육광철(백석총회 사회국장)	이성철(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 원장)
이재덕(사회복지법인 자립성덕헌 원장)	이재천(CBS기독교방송)
이종관(울산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이창연(스포츠서울INB)
장경준(선한이웃네트워킹)	전병호(군산나운복음교회)
정근두(울산교회)	조종남(장충단교회 명예목사)
진희근(승리교회)	최정봉(성광교회)
추연호(은파교회)	하정열(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이사장)

나. 법인이사 명부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김봉준(아홉길사랑교회)
김종생(빛과소금)	손인웅(덕수교회)
유만석(수원명성교회)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
정성진(크로스로드)	

2. 회의록

가. 총회 회의록

월드디아코니아 총회 회의록

(2019년 2월 21일(목) 08:30~08:50 /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

■ 정기총회

1. 개회기도

상임단장 이상대 목사가 개회기도를 하다.

2. 개회선언

의장이 대의원을 점명하니 28명중 15명 참석으로 정관 15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3.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보고사항

가.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8년 사업 및 결산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나. 2018년 감사보고

2018년 감사 결과를 박홍자 감사가 보고하다.

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의 연임을 보고하다.

5. 결의사항

가. 의안1.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래서 승인하기로 하고 필요시 가감을 이사장과 실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6.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며 김동배 교수의 기도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같은 날 오전 8:50이었다.

2019년 2월 21일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월드디아코니아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2월 21일(목) 07:00~07:50

장 소 :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

■ 경건회

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인도로 경건회를 시작하다. 박종삼 목사의 기도 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1절과 4절을 제창하다. 이사 손인웅 목사가 데살로니가전서 1절 3절 본문으로 설교 후 최희범 목사의 축도로 경건회를 마친다.

■ 회의

1. 회원점명 및 개회

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사회로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5명 위임 2명으로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정원이 되니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한다.

○ 참석 : 정성진 손인웅 고명진 정무성 김종생

○ 위임 : 김봉준 유만석

○ 배석 : 김동배 최희범 박종삼 김성이 이영훈(代이승한) 오정호(代고일국)
박홍자(감사) 천영철(사무총장)

2.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2019 총회 보고사항

가. 2018년 사업보고를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2018년 감사보고를 박홍자 감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2018년 결산보고를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라.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2019년 총회 부의사항

가. 사무총장 연임의 건

사무총장의 연임을 허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하다.

임기 : 2019.03~2023.03

5. 폐회

이사 김종생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니 오전 7시 50분이었다.

2019년 2월 21일

3. 2019년 사업보고

1.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가. 일시 : 2월 21일(월) 오전 7:00
- 나. 장소 : 여의도 CCMM빌딩 12층
- 다. 내용 : 정기 이사회 및 총회

2. 아이티 직업학교 운영

- 가. 현황 : 아이티 직업학교 개설(2016년 3월 10일) 및 운영
- 나. 내용 :
 - 매년 4개월 3학기 과정으로 영어, 컴퓨터, 스페인어학과 운영
 - 신학 수업 50여명 재학
 - 어린이 유치원 60여명 재학
 - 매주일 200여명의 현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배
 - 커뮤니티센터의 활용(결혼식, 주민모임)

3. 아이티 직업학교 후원 캠페인

- 가. 모금기간 : 2019년 12월 20일부터 5개월간
- 나. 모금방법 : 국민일보 광고(2019.12.20.) 및 임회원교회
- 다. 모금내용 : 아이티 직업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4. 캄보디아 어린이 교육

- 가. 망고나무 출판 프로젝트
 - 캄보디아어 동화책 10종 출판
 - 깜뽕즈낭 지역 공립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독서지도교육 워크숍
- 일시 : 2019년 3월 25일~27일
- 장소 : 깜뽕방 초등학교(깜뽕즈낭 주 깜뽕렝 군 소재)
- 참가 : 깜뽕렝 군 공립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20명
- 강사 : 송주은 박사(경기영어도서관협회)등 4명

- 나. 캄보디아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교육 세미나 및 기자재 지원
 - 유치원 교사 재교육 및 유치원 커리큘럼 개발

다. 꿈의 학교 프로젝트

- 깜뽕즈낭 지역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예체능교육, 영어교육, 공동체 훈련 진행

라. 희망도서관 프로젝트

- 캄보디아 공립초등학교 내 도서관 도서 및 교육기자재 지원
- 10개 학교에 8100권의 책, 12개의 책장, 지구본, 지도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교명	지원내용			
		어린이 그림책	권	교재	나무책장
1	Romeas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1,100 권	교재	나무책장
2	Kdol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1,100 권	교재	나무책장
3	Khlong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1,100 권	교재	나무책장
4	San Parat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800 권	교재	나무책장
5	Krang Skier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800 권	교재	나무책장
6	Som Pan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550 권	교재	나무책장
7	Ta Nei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550 권	교재	나무책장
8	Koh Kandal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550 권	교재	나무책장
9	Ek Liphol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550 권	교재	나무책장
10	Srae Uk Elementary School	어린이 그림책	440 권	교재	나무책장

5. 연대사업

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원단체

6. 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운영

국문 홈페이지 <http://www.koreandiakonia.org>

영문 홈페이지 <http://en.koreandiakonia.org>

나.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1225>

유튜브 <http://www.youtube.com/c/한교봉KD>

다. 언론광고 (사업별 보도자료, 사업현장 동행취재)

라. 홍보물 제작 (2019년 연차보고서 제작)

감 사 보 고 서

(사)월드디아코니아 대표회장 귀하

본 감사는 2020년 2월 24일 10시 30분부터 귀 기관의 2019년도 중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0. 02. 24.

감사 김 욱 현 
감사 박 홍 자 (인)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감 사 의 견 서

1. (사)월드디아코니아

가. 감사에 임하면서 다음의 장부 및 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1) 수입 지출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입출금 전표
- 2) 각종 영수증 확인 및 편철상태
-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보관상태
- 4) 각종 공문서 수발 및 정리상태
- 5) 지출 계정별로 타당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나. 수입 및 지출(전년도 이월금포함)을 검토한바

2018년도 이 월 금 : 193,325,581원

2019년도 총 수입금액 : 28,777,251원

2019년도 총 지출금액 : 100,825,58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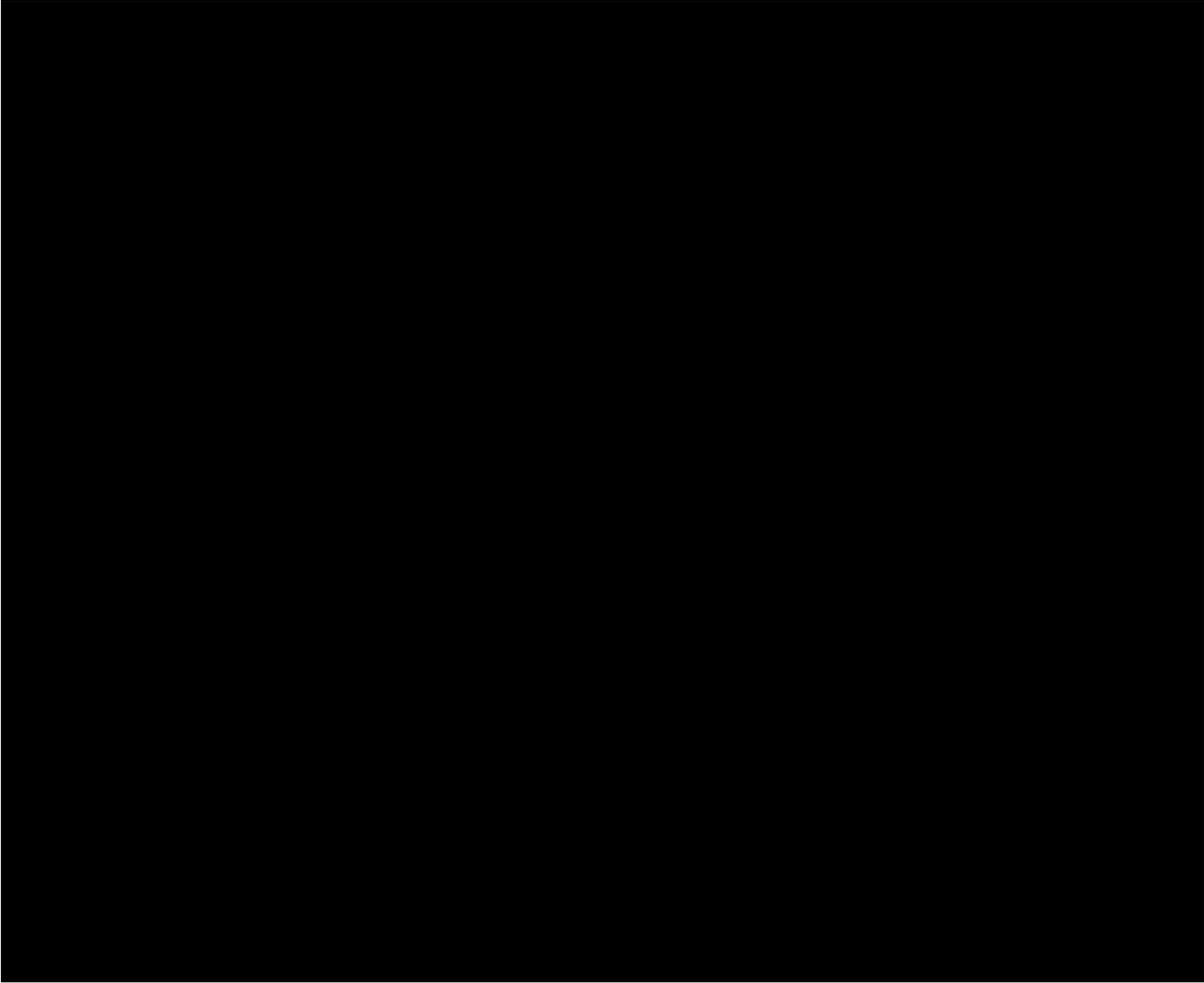
잔 액 : 121,277,246원입니다.

(통장잔고 118,710,449원 /보유현금 및 사업비환전 2,566,797원)

다. 감사결과 월별 재정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종 부책 등의 정리도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영수증 은행잔고증명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바 정확하였습니다.

5. 2019년 결산보고서





6. 2020년 사업계획

1. 2021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가. 사업목표

- 2021년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다. 사업내용

- 2021년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행사명: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주 최: 2021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위원회
주 관: (사)월드디아코니아
- 2021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 구성 및 대회 준비
- 2021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사무실 개소
- 정부(문체부, 서울시) 및 한국교회총연합, 각 교단 협력

라. 사업예산

- 50,000,000 원

2. 조직사업

가. 사업목표

- 임원 및 회원 조직관리 및 확대사업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다. 사업내용

- 정기임원회의 및 임원간담회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라. 사업예산

- 5,000,000 원

3. 해외 재해구호 사업

가. 사업목표

-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해외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나. 사업기간

- 재해발생시

다. 사업내용

- 재해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해외사업본부
사업협력: 한국교회총연합
- 마. 사업예산
○ 30,000,000 원

4. 해외 개발협력 및 교육사업

1) 아이티 직업학교 지원사업

- 가. 사업목표
○ 아이티 카라콜 지역에 설립한 직업학교 (Korean-Haitian Professional School) 지원 사업
-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직업학교운영 지원
○ 직업학교현장 임원 방문
-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해외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60,000,000 원

2) 캄보디아 희망도서관 사업

- 가. 사업목표
○ 캄보디아 초등학교 아동도서 보급 및 도서관 지원
-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월드디아코니아 캄보디아 (2015년 4월 1일 설립, 지부장: 최수철 목사)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 교육청소년체육부와 협력
○ 국내 아동서적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출판 및 보급
○ 깜퐁즈낭 쓰루눅 희망 어린이 도서관 설립 지원
- 라. 사업주관: 월드디아코니아 캄보디아
- 마. 사업예산
○ 10,000,000 원

5. 모금 캠페인 사업

- 가. 사업목표
○ 아이티 직업학교 후원 캠페인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다. 사업내용

- 아이티 직업학교 후원 캠페인 ‘아이티에 꿈과 희망을’ 진행
- 온라인,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모금 캠페인 전개
- 캠페인 연예인 홍보단 조직
- 기부자 상담 및 관리

라. 사업예산

- 33,000,000 원

6. 홍보사업

가. 사업목표

- 단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다. 사업내용

- 온라인 홍보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 언론사 홍보
 - 사업별 보도자료 배포
 - 긴급구호 및 사업현장 동행취재 지원
 - 신문 및 방송 광고
- 홍보물 제작
 - 2019년 연차보고서 제작
 - 홍보용 리플렛, 홍보키트, 홍보용 동영상 제작
 - 각종 자료집 제작

라. 사업예산

- 23,000,000원

7. 연대사업

가. 사업목표

-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다. 사업내용

- 1)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3) 한국교회총연합
 - 4) 각 교단 사회봉사부 및 교계연합단체
- 라. 사업예산
- 3,000,000원

7. 2020년 예산(안)

World Diakonia 2020 예산(안) (2020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수입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19년 결산금액	2020년 예산금액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기본자산제외)	143,325,581	71,277,246
후원금	사업후원금	25,200,800	185,000,000
기타수입	잡이익,기타수입,선납세금	3,576,451	3,500,000
총 계		172,102,832	259,777,246

■ 지출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0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10,277,246
	업무비	9,000,000
	인건비	29,500,000
	소 계	48,777,246
사업비	1. 2021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사업	50,000,000
	2. 조직사업	5,000,000
	3. 해외 재해구호 사업	30,000,000
	4. 해외 개발협력 및 교육사업	70,000,000
	5. 모금 캠페인 사업	33,000,000
	6. 홍보사업	23,000,000
소 계		211,000,000
총 계		259,777,246

8. 월드디아코니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World Diakonia'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장,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이재민과 피해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시 해외 각 도시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해외 자원봉사운동의 전개 및 교육
3. 해외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4. 국내외 기부문화 확산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감사 2인
4.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5인-20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사업을 관장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위촉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대의원을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되는 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 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 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해야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9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둘 수 있다.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12년 2월 6일 제정